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87
----------	------

2016년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1. 1. 박마루 의원 발의 【찬성자 16명】
2. 회부일자 : 2016. 11. 3.
3.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마루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제정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와 위탁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광역센터와 지역센터의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서비스 이용 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립할 경우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인력의 고용 승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정책담당관 예산 추계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제정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와 보조기기 지원 사업(안 제4조), 광역보조기기센터(안 제5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안 제6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에 따른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등을 규정함.

- 본 제정안은 총 11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제7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제9조(비용 감면 등)
제10조(고용 승계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제정됨.
- 2016년 9월말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39만 1천 5백여 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8만 8천여 명으로 장애인 인구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¹⁾. 2015년말 기준 등록장애인 중 60세 이상이 53%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연령도 지속적으로 고령화 되어 갈 것으로 예측됨.
-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 노인 등의 보조기기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노인 등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1) 서울시 장애인 및 노인 인구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9월
장애인	407,528	403,435	398,908	393,380	391,517
노인(비율)	1,105,583(10.8%)	1,161,708(11.5%)	1,216,529(12.0%)	1,262,436(12.6%)	1,288,162(12.9%)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장애인·노인 등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조항별 주요사항 검토

가.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 사업에 대한 규정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역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이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 보조기기 지원 관련 규정들을 정하고 있는 사항과도 관련된 것으로, 조례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보조기기센터 운영 관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서울특별시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전문인력 교육·연수, 보조기기의 보급·대여·전시체험장 운영, 맞춤 제작·개조·수리 서비스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의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상위 법령인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²⁾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와 용어를 맞추기 위하여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로 규정한 것임.
 -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하여서는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543호) 제12조³⁾에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

2)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8호 생략)

3) 제12조(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인력배치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시·군·구에 지역센터의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센터의 설치 기준, 조직 운영 등 이

군·구에 지역센터의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센터의 설치 기준과 조직 운영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를 지원(맞춤 제작·개조, 임대, 수리 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2008년 12월부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현황〉

센터명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노원센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서센터
수탁법인	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위치	강동구 고덕로 201	노원구 덕릉로 70 가길 96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서비스 권역	8개 자치구(강동, 송파, 강남, 용산, 서초, 광진, 성동, 중구)	8개 자치구(노원, 도봉, 강북, 은평, 성북, 중랑, 동대문, 종로)	9개 자치구(강서, 마포, 서대문,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 서울시는 기존의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지역보조기기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광역(중앙)보조기기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인 바,
 - 관련법과 서울시의 관련 사업 운영 계획에 비추어 볼 때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마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87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1일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1명)
찬 성 자 : 박운기, 성중기, 황준환, 남재경,
김용석(서초), 김경자(양천), 유 용,
주찬식, 남창진, 이명희, 진두생,
장구덕, 김창원, 김혜련, 유 청,
김선갑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제정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나.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다.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와 위탁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의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서비스 이용 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립할 경우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인력의 고용 승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서울특별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4.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5.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관리 및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6.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② 광역센터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와 주택 구조 및 편의시설 등의 연계를 위한 설계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2.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건설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2.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3.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6.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7.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등의 지역센터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고용 승계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립할 경우 광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제7조(운영의 위탁)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발생
- 같은 조례안 제9조(비용 감면 등)에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

* 제9조 비용 감면과 관련하여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기 추진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비
 - 관련 업무가 위탁으로 수행될 경우, 제4조·제5조·제6조 관련 비용은 운영 위탁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바, 운영 위탁비를 대상으로 비용추계
 - ※ 단,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3개소(강동,노원,강서)는 지역보조기기센터로 파악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 ※ 운영 위탁비는 인건비, 사업비, 임대용 보조기구 구입비를 포함
-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나. 전제

- 1)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2) 광역보조기기센터는 1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17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3) 지역보조기기센터는 권역별 1개소씩 총 5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되,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센터 3개소는 기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보아 '18년, '19년에 각 1개소씩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4) 운영위원회는 광역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공동 운영위원회로 하되, 20명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5) 센터의 연간 운영 위탁비는 사업비, 인건비, 임대용 보조기구 구입비를 포함하되, 인건비상승 및 물가상승 등은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후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라. 방법

- 1)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연간 운영 위탁비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연간 운영 위탁비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비를 합산하여 산출
 - ※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비는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비” 사업 예산을 준용하며(80,000천원) 격년제 실시로 산출

2)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연간 운영 위탁비는 “2016년 서울시 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계획”의 센터별 예산중 가장 규모가 큰 강동센터 예산을 준용

3) 운영위원회 비용은 광역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공동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 인원 및 회의 횟수 등 세부 내용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준용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준용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 2명(시장, 복지본부장)을 제외한 18명, 운영경비는 20명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4,084,83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센터 운영 위탁비 (제7조)	광역보조 기기센터운영 (제4조, 5조)	350,917	270,917	350,917	270,917	350,917	1,594,585	
		지역보조 기기센터운영 (제4조, 6조)	270,917	541,834	541,834	541,834	541,834	2,438,253	
		운영위원회 운영비(제8조)	10,400	10,400	10,400	10,400	10,400	52,000	
		소계(b)	632,234	823,151	903,151	823,151	903,151	4,084,838	
□ 총 비용(b-a)			632,234	823,151	903,151	823,151	903,151	4,084,838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주무관	최 경 희

☎02-3705-1282, e-mail(hiru90@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위탁비
-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공동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2. 세부추계내역

가. 광역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위탁비 : 총 3개소(광역 1개소, 지역 2개소)

○ 총비용 ≙ 4,032,838천원

- 총비용 = $\sum_{i=1}^5$ (광역보조기기센터 연간 운영 위탁비 + 지역보조기기센터 연간 운영 위탁비)_i

• 연간 운영 위탁비 = 광역보조기기센터 연간 운영 위탁비 + 지역보조기기센터 연간 운영 위탁비

• i = 비용추계 연차(2017~2021년)

• 광역보조기기센터 연간 운영 위탁비 ≙ 1,594,585천원

= 인건비(190,917천원) + 사업비(30,000천원) + 임대용 보조기구 구입비(50,000천원) +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비(80,000천원)

(단위 : 개소, 천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구분						
광역보조기기센터 운영 개소 수	1	1	1	1	1	-
광역보조기기센터 연간 운영 위탁비	350,917	270,917	350,917	270,917	350,917	1,594,585

※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비는 2017년 시행 시작으로 격년제 실시하는 것으로 산출

• 지역보조기기센터 연간 운영 위탁비 ≙ 2,438,253천원

= 인건비(190,917천원) + 사업비(30,000천원) + 임대용 보조기구 구입비(50,000천원)

(단위 : 개소, 천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구분						
지역보조기기센터 추가운영 개소 수	1	2	2	2	2	-
지역보조기기센터 연간 운영 위탁비	270,917	541,834	541,834	541,834	541,834	2,438,253

※ 지역보조기기센터수는 서울시 5대 권역별(도심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로 1개소씩 총 5개소 운영 목표로, 기 추진 운영되는 3개소 제외하여 추가 운영 개소에 대한 운영 위탁비 산출

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 총비용 ≙ 52,000천원

- 총비용 = $\sum_{i=1}^5$ (운영위원회 연간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17~2021년)

• 운영위원회 연간비용 = 위원회 수당 + 운영 경비

• 위원회 수당 = 1인(100천원) × 18명 × 4회 = 7,200원

• 운영 경비 = 1인(40천원) × 20명 × 4회 = 3,2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구분						
위원회 수당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운영 경비	3,200	3,200	3,200	3,200	3,200	16,000
계	10,400	10,400	10,400	10,400	10,400	52,000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준용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 2명(시장, 복지본부장)을 제외한 18명, 운영경비는 20명을 기준으로 추계

【참고】 2016년 강동센터 예산 산출 내역 및 서울시 재활보조공학센터 주요 사업 내용

○ 2016년 강동센터 예산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금액	비율	산출근거	
자본 보조	임대보조기구/장비구입비		50,000	16.9	임대용 보조기구 및 장비구입	
	소 계		50,000	16.9		
인건비	인건비		190,917	64.5	38,183,400×5명 - 보조공학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2016.1.31. 퇴사예정) - 급여, 4대보험 및 퇴직연금 포함	
	소 계		190,917	64.5		
예산 지원금	사업비	홍보비	6,000	2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물 제작 5,440 사업 홍보비 560	
		프로그램 운영 제반경비	7,014	2.3	우편발송비 240(20×12월) 사무기기 임대 594(49.5×12월) 맞춤제작·개조 재료구입 2,580(258×10회) 전시장 세척실 운영비 1,800(150×12월) 보조기구관리비 1,800(150×12월)	
		중앙센터 사업비	4,880	1.6	*홈페이지 진상화 관리비 1,800 *만족도 조사진행비 880 실무자워크숍 진행비 500 *운영위원회의 진행비 1,700(850×2회)	
		전문가고육 및 대외활동비	4,360	1.5	연수참가비 1,200(200×6명) 자문비 300(150×2회) 네트워크활동비 660(55×12월) 해외연수비 2,000(1,000×2명) 산업안전교육비 300	
		공공요금	3,260	1.1	사무용 전화요금 700(58.3×12월) *1588 대표전화운영비 660(55×12월) 전기료 1,200(100×12월) 도시가스비 700(58.3×12월)	
	인프라비	여비	1,100	0.4	현장서비스 진행비 1,100(10×10회×11월)	
		수용비	1,200	0.4	사무용품비 및 인쇄비 700(70×10회) 회계감사 수수료 500	
		차량비	1,200	0.4	유류 및 차량정비비 1,200(100×12월)	
		시설비	786	0.3	에어컨세척비 150 산업안전대행료 336(28×12월) 작업환경측정비 300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200	0.1	특수건강검진비 200(100×2명)	
	소 계		30,000	10.1		
	예산 지원금 계			270,917	91.5	

○ 서울시 재활보조공학센터 주요사업 내용

-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 구입비 지원, 후원 연계 및 맞춤 제작·개조 서비스 제공
- 홍보 및 교육 사업 등
 - 내부직원교육, 조사연구 사업 및 만족도 조사, 시연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제작
 - 장애인 당사자 및 보조기구 사용 훈련
 - 보조공학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보조기구 전시체험장 견학프로그램 및 홍보 부스 운영
- 사례관리 및 인프라 구축
 - 사례관리 및 보조기구, 회계 및 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센터 실무자 워크숍 주관

자료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